금융상품 판매대리・중개업자의 고지사항 이행 확인서

본 고지사항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(보험대리점, 보험설계사, 기타 모집유자격자)가 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 제26조 제1항에 따라 판매대리·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.

1.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명칭과 업무내용 등

국민은행이 대리·중개하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명칭과 업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

2. 1社(사) 專屬(전속)의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인지 여부

국민은행은 하나의 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1사 전속의 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아닙니다.

3. 금융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 및 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

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금융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는 그 소속 임직원 또는 금융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대리·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4.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권한, 보험료 수령 권한 등의 유무

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사실상 중개(주선) 하는 역할을 하며, 다음의 각 권한은 없습니다.

- ①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를 대리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할 권한
- ② "보험료" 등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한
- ③ 금융소비자로부터 청약, 해지 등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금융소비자가 금융 상품 직접판매업자에게 해야 하는 계약 전·후알릴의무사항의 고지·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

5. 다른 금융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경우 위탁자의 명의, 증표 등

국민은행은 다른 판매대리·중개업자로부터 대리·중개 업무를 위탁받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.

6.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정한 수수료 외의 금품 등 요구·수령 금지

국민은행이 판매대리·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이나,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
7. 금융소비자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보의 보유・관리 주체

금융소비자에 관한 정보(개인정보, 신용정보 등) 및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만 보유·관리합니다.

※ 국민은행은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8조에서 정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의무로서 일부의 업무관련 자료만을 위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 및 유지·관리합니다.

8.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

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거나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
9. 금융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이력정보 등 확인방법

동 판매인의 업무수행 이력에 관한 정보 등 다음 각 사항은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e-클린보험서비스 (http://www.e-cleanins.or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①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설계사 이력(위탁 법인 및 그 법인과의 계약기간 포함)
- ②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영업정지·등록취소·과태료 처분과「보험사기방지특별법」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이력
- ③「보험업감독규정」제9-4조의2 제7호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